

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 
[시행 2008.3.3] [지식경제부령 제1호, 2008.3.3, 타법개정]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정보화촉진 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8.25, 2006.2.13>

제2조 (정보자원) 「정보화촉진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.2.13, 2008.3.3>

1.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
3.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의 개발·관리·운영을 담당하는 인력
4.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을 도입·운영·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

[본조신설 1999.7.23]

[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<1999.7.23>]

제2조의2 (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신청 등) ① 「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우수신기술(이하 "신기술"이라 한다)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2.13, 2008.3.3>

1. 기술의 내용 및 특허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
2.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그 용도
3.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
4.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
5. 기술의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
6. 기타 기술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

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(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)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25, 2008.3.3>

[전문개정 1999.7.23]

[제2조에서 이동 <1999.7.23>]

제3조 (신기술사업화등의 지원신청<개정 1999.7.23>) ①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7.23, 2004.12.30, 2008.3.3>

1. 신기술사업화의 내용
2. 사업화실적 및 투자계획

3. 시제품 개발목표,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제품개발계획서(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
4. 삭제 <2004.12.30>
5. 삭제 <2004.12.30>

6. 당해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신설 1999.7.23>

1.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: 1년 이내
2.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: 3년 이내

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1999.7.23, 2006.2.13, 2008.3.3>

1. 제2항제1호의 경우 : 6월 이내
2. 제2항제2호의 경우 : 3년 이내

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개발하거나 사업화한 제품과 당해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당해제품이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의 신제품 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1999.7.23, 2006.2.13, 2008.3.3>

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절차·지원방법 및 사후관리와 신제품마크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1999.7.23, 2006.2.13, 2008.3.3>

제4조 (정보통신관련기관등의 지원)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>

1. 기관(단체)의 조직구성표
2.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개요
3. 지원업무 세부수행계획

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>

1. 정보통신산업 발전에의 기여도
2.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
3. 지원금액의 적정성
4. 지원의 필요성

③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3.3>

제5조 삭제 <2008.3.3>

제6조 삭제 <2008.3.3>

제7조 삭제 <1999.7.23>

제8조 삭제 <1999.7.23>

제9조 삭제 <1999.7.23>

제10조 삭제 <1999.7.23>

제11조 삭제 <1999.7.23>

제12조 삭제 <2008.3.3>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·운영)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1999.7.23, 2004.12.30>

②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1999.7.23, 2004.12.30, 2006.6.16, 2008.3.3>

1.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관계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 각 1인

2.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
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

4.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각 1인

③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, 간사는 지식경제부소속 공무원중 기금의 운용·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08.3.3>

제14조 (기금의 운용·관리요령)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운용·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3.3>

②기금의 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3>
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08.3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3> 까지 생략

<54>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보통신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2항, 제3조제1항·제3항·제4항·제5항, 제4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항·제2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보통신부차관"을 "지식경제부차관"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"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"를 "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"을 "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"정보통신부"를 "지식경제부"로 한다.

제5조, 제6조,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,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하고,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그림 부분 중 "정통"을 "지식경제"로 한다.

<55> 부터 <64> 까지 생략